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본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과 과제

권혁남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에 공포되고,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6월 24일 전주에서 전북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지역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혁남 전북중재부 중재위원이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본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내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황현찬 중재부장(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이 생성해내는 가상공간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과정에 중간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가공되지 아니한 생생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거의 없으며, 쌍방향의 정보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 독자와 기자의 구별도 모호하고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진실성과 그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문체가 난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을 통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자정능력 또한 기존의 매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매체로 인터넷이 거론되는 것이다.

인터넷언론은 인터넷에서만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기존 언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종합일간지 형태의 언론이라고 규정되는데, 언론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대체로 주류 인터넷언론, 인덱스형 인터넷언론, 독립형 인터넷언론, 토론/페러디형 인터넷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주류 인터넷 언론은 뉴스 생산과정을 거친 기존의 기사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인덱스형 인터넷언론은 이런 기사를 매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뉴스 생산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기존 언론과는 다른 독특한 뉴스 생산 및 뉴스 수용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독립형 인터넷과 토론/패러디 유형의 인터넷언론을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인터넷이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가능성 못지않게 그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으로서 그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신문법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을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한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인터넷 포털이 정보나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돼 왔다.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포털사이트와 제휴하면서 뉴스 공급채널이 양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자체에 의한 보도보다 포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인터넷 포털 뉴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포털 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09년 2월에 포털 등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오는 2009년 8월 7일부터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게 된다.

2.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공간의 언론피해구제

지난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반론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해 절반의 성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존 언론중재법이 안고 있던 언론 자유의 침해 요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함은 물론,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포털, 언론사닷컴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기존 법제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요구 속에서 국회는 2009년 1월 13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청구가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개정 언론

중재법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포털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추가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간 보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삭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언론중재법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포털 및 언론사닷컴 등에 의한 수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요구를 감안해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언론중재법이라는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닷컴 사이트 게재물에 대해서도 언론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기업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기존 매체 이용자를 능가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함은 물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인격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언론중재의 적용대상에 해당 인터넷 기반 뉴스 서비스 행위를 추가한 조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3. 인터넷 공간의 뉴스생산과 유통 현황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구조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수하다. 세계적으로 신문사나 방송사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프라인상에서 언론활동을 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사들이 등록된 것만도 1천 3백여 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8백여 개나 된다. 또한 인터넷 뉴스 유통에서 인터넷신문과 언론사의 인터넷사이트가 포털사이트에 의존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국만의 현상이다. 인터넷에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들이 많게는 100개 이상의 언론사에게서 기사를 공급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해 인터넷에서 주된 뉴스 유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공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인터넷 공간의 뉴스생산 측면에서는 뉴스품질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뉴스유통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향후 과제

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을 포함시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위상과 행위를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위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등록, 독자의 권리보호, 교육, 피해구제, 정정보도, 기사 보관의무 등 기존 언론에 요구되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보다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번에 개정된 언론중재법과 기존의 신문법에서 그간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포털 등의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이 제공하던 뉴스서비스가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개념화되었지만, 언론사닷컴을 비롯한 여타 언론사들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았다.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법 규정 내에 포함되어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공백 없이 규정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문법 제2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언론사닷컴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취재인력 2인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30% 이상의 기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다 언론사닷컴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보관의무 부여는 해당 언론과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관의 대상이 되는 기사원본의 경우 당연히 보관되어야 하고, 이미 보관되고 있지만, 배열기록의 경우 보관방식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 시 필요한 영역에 한정시켜 보관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영역에서 지원 등 부담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적용해서 언론사들과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반론보도·정정보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 역시 큰 과제이다. 명확한 것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존의 전통 매체와는 그 게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진(2008)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조정 신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 뉴스 분쟁 처리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게재 시간문제-이는 신문·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가 보도 횟수와 보도문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인터넷 매체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게재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 간 조정 성립된 30건 중 절반이 넘는 17건이 13~24시간이었다. 이외 24시간, 48시간, 72시간 초과 등도 있었다.


(2) 게재 위치-인터넷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화면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터넷에 저장된 원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하도록 조건을 추가한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매체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반론권 부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3)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원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원 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이 18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12건이다. 활자 크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글자 크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기와 아울러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 건도 없었

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경우 동일 화면이라 하더라도 글자 크기가 다르고, 고딕체냐 또는 명조체냐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글자 크기와 함께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반론보도문의 자수(字數)-반론보도문의 내용 못지않게 자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자수가 반론문 효과의 기본적인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91조 제5항은 “방송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 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원문 보도보다 지나치지 않

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기사 삭제 요청-기존 매체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 

토 론

사 회 황 현 찬

전북중재부 중재부장 /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황현찬(사회자, 중재부장) : 주제발표를 해주신 권혁남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하신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새전북신문 편집국장) : 뉴스생산자와 뉴스유통자간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퍼져나가게 되는데 뉴스 생산자로서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결정시 뉴스 생산자와 뉴스 유통자 간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인과 공적 사안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순(부안저널 대표) : 언론중재법은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는 물론 언론사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도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언론관련사건은 제소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하거나, 법원에 제기된 언론관계소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받은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신청인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위원회 결정을 이행했다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 존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혁남(발표자, 중재위원) : 언론사와 유통사 간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북중재부도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루었지만 생각보다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자와 유통자 간의 책임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공인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연예인들도 자신이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인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공인은 선출직이나 임명직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위원회 선심위 결정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위원회의 결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원회 결정이 번복되었다고 하여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나 법원 결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강현구(전주 경실련 집행위원장)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의 처리결과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각종 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위원회의 인용률이나 조정률이 대체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중재위원회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혁남 : 2009년 6월 현재 피해구제율이 7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7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피해구제율도 중요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다녀간 언론인들은 기사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히 보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예방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전북지방경찰청 홍보계장) : 개정된 언론중재법에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보도나 기사가 문제될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구제를 받기까지 해당 기사는 계속 떠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되고 구제의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긴급구제가 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현찬 : 정보통신망법에 임시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통신망의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인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것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박주현(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 지역신문과 제휴한 거대 포털 사이트들이 선정적인 기사 제목만을 골라 노출시킴으로써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역신문과 포털 간의 책임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운국(전주지법 부장판사)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들은 보도물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의 댓글이나 게시판 내용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용주(사무총장) : 6개월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문화부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자는 보관의무를 면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뉴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의 댓글이나 무분별한 게시물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권성(위원장) :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발제자,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사회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포털사이트에 대한 지위는 법 개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로 언론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인터넷언론의 등장으로 기존 매체와 달리 피해가 큰데, 피해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는 중재부를 증설하고 당직 중재부나 상설 중재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과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토론 중에 뉴스생산자와 유통자 간의 책임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 경우 두 주체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자가 되므로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판결로 정리된 것이 없으므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중재부가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두 주체 간 책임 분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기준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례가 집적된 후 규정화하여 적정 분배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거나 법원이 언론분쟁사건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논의된 적이 있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최근 서울과 부산에 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사건을 회부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이 법원의 판결액보다는 소액입니다. 언론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많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